

의안번호	2209533
의 퇴 인	전재수 의원
회 답 일	2025.07.31
추계번호	25C2051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비용추계서】

I. 비용추계 결과

- 개정안에 따라 다자녀 가정의 기준을 완화하는 경우 추가재정소요는 2026년 1조 4,984억원, 2030년 1조 5,174억원 등 향후 5년간 7조 5,404억원(연평균 1조 5,081억원)으로 추계

[표 1]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2026~2030년

(단위: 백만원)

구분	2026	2027	2028	2029	2030	합 계	연평균
안 제49조의4 (다자녀 가정 기준 완화)	1,498,425	1,503,288	1,508,302	1,512,959	1,517,417	7,540,391	1,508,078

주: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자녀가 2인인 가구가 다자녀 가구로 편입되며 해당 가구 첫째 자녀에 대한 지원액이 증가하나, 관련 통계의 부재로 이를 제외하고 산출한 결과임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II. 재정수반요인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1	안 제49조의4 (우선적 학자금 지원)	(제1항) 재단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 또는 제3호에 따른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의 수급자, 출산 또는 입양으로 <u>둘 이상</u> 의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의 모든 자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학생에게 우선적으로 학자금 지원을 할 수 있다.	재량규정

III. 비용추계의 전제와 상세내역

1. 재정수반요인별 추계 여부

연번	조·항(조제목)	추계여부	비고(추계 미 실시 사유)
1	안 제49조의4 (우선적 학자금 지원)	○	

2. 비용추계의 총괄적 전제

- 개정안은 학자금 우선지원 대상인 다자녀 가정의 기준을 셋 이상의 자녀에서 둘 이상의 자녀로 조정하려는 것임
 - 한국장학재단은 「교육기본법」,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등에 근거해 대학 재학생의 소득수준과 연계한 국가장학금 지원 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며, 정부는 한국장학재단에 자본금을 출연하고 있음
 - 다자녀 장학금은 첫째와 둘째, 셋째 이상으로 구분되어 국가장학금 I 유형을 상회하는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구체적인 내역은 아래 표와 같음
 - 한국장학재단은 국가장학금 I 유형 및 다자녀 장학금을 모두 지원할 수 있는 경우, 다자녀 장학금을 우선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참고로, 한국장학재단은 2025년 국가장학금 I 유형과 다자녀 장학금 지원 대상을 기존 8구간 이하에서 9구간 이하로 확대함

[표 2] 지원구간에 따른 연간 국가장학금 최대 지원금액

(단위: 만원)

구분		기초·차상위	1구간	2구간	3구간	4구간	5구간	6구간	7구간	8구간	9구간
I 유형		전액	600			440			360		100
다자녀	첫째 둘째		610			505			465		135
	셋째 이상		전액								

- 주: 1. 국가장학금 I 유형과 중복 시 다자녀 유형 우선지원, 중복수혜불가
 2. 학자금 지원구간은 1~9구간의 경우, 기준중위소득 대비 비율을 따르고, 기초·차상위구간의 경우 기초·차상위 자격 보유 여부를 기준으로 함
 3. 9구간 지원의 경우 2025년부터 도입됨
 4. '25년 2학기부터 적용됨

자료: 한국장학재단

- 개정안에 따라 다자녀 가정의 둘째 이상부터 등록금 전액이 지원된다고 가정하고 추계
 - 개정안은 학자금 우선지원 대상인 다자녀 가정의 기준을 완화하면서 구체적인 지원방안을 규정하고 있지 않음
 - 이에 현행 제도하에서 다자녀 가정의 셋째 이상을 대상으로 하는 등록금 전액 지원이 둘째부터 이루어지는 것으로 가정

- 기초·차상위구간의 학생은 이미 등록금 전액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추계의 대상에서 제외함
- 한편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자녀 2인인 가구가 다자녀 가구로 편입되며 해당 가구 첫째 자녀에 대한 지원액이 증가하나, 관련 통계의 부재로 추계의 대상에서 제외함
- 따라서, 본 추계서에는 1~9구간 가정의 둘째 자녀에 대하여 등록금 전액 지원을 실시하는 경우 발생하는 추가재정소요를 추계
 - 다자녀 가정 기준 완화로 ①국가장학금 I 유형에서 다자녀 장학금 수혜자로 신규 편입된 인원(이하 “편입 인원”)과 ②기존 다자녀 장학금 신청 대상 인원(이하 “기존 인원”)으로 구분하여 추계

[표 3] 현행법과 개정안 비교

구분	현행	개정안
자녀 2인 가구 중 둘째 ¹⁾	국가장학금 I 유형 대상자	다자녀 장학금 대상자
자녀 3인 이상 가구 중 둘째 ²⁾	다자녀 장학금 대상자	다자녀 장학금 대상자

주: 1) 편입 인원

2) 기존 인원

자료: 개정안 내용을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 추가재정소요는 등록금과 장학금 지원액의 차액이며, 전액 한국장학재단에 대한 정부 출연금으로 충당된다고 가정
 - 대학 운영 주체 및 유형에 따른 등록금 편차를 고려하여 운영 주체에서는 국·공립 대학 및 사립대학으로, 대학 유형에서는 일반·교육·산업대학(이하 “일반대학 등”) 및 전문대학으로 구분하여 추계
 - 모든 대학 재학생은 국가장학금을 신청하며, 추계기간 동안 소득구간별 국가장학금 지원액은 현행과 동일하다고 가정
- 안 부칙에 따른 시행일이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임을 고려하여, 추계기간은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년간으로 함

3. 재정수반요인별 상세 추계내역

- 총괄적 전제의 가정에 따라 ①편입 인원과 ②기존 인원으로 구분하여 추가재정소요를 추계
 - 편입 인원은 개정안에 따라 국가장학금 I 유형에서 다자녀 장학금 수혜자로 편입되는 인원으로 2인 가구 중 둘째임
 - 기존 인원은 현행 다자녀 장학금 신청 대상 인원으로 3인 이상 가구 중 둘째임
- 1인당 평균 등록금과 국가장학금 지원액의 차액에 재학생 수를 곱하여 구간별로 추가재정소요를 추계
 - (1인당 등록금) 대학정보공시 통계에 따른 1인당 연평균 등록금에 직전 3개년도 상승률을 적용하여 대학 유형별로 산출

[표 4] 대학 유형별 1인당 연간 등록금 전망

(단위: 천원)

구분		2026	2027	2028	2029	2030	합계	연평균
국·공립	일반대학 등	4,227	4,235	4,244	4,252	4,260	21,218	4,244
	전문대학	2,408	2,417	2,426	2,435	2,444	12,131	2,426
사립	일반대학 등	7,716	7,762	7,809	7,856	7,903	39,047	7,809
	전문대학	6,391	6,463	6,536	6,609	6,683	32,682	6,536

자료: 교육부 제출자료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 (국가장학금 지원액) 다자녀 가구의 둘째 자녀에게 등록금 전액이 지원되며,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현재 국가장학금 지원제도가 유지된다고 가정
 -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자녀 2인인 가구가 다자녀 가구로 편입되며 해당 가구 첫째 자녀에 대한 지원액이 증가하나, 관련 통계의 부재로 추계의 대상에서 제외함

[표 5] 현행 국가장학금 지원액

(단위: 만원)

구분	I 유형	다자녀	
		첫째 및 둘째	셋째 이상
1~3구간	600	610	전액
4~6구간	440	505	
7~8구간	360	465	
9구간	100	135	200

주: 국가장학금 I 유형과 중복 시 다자녀 유형 우선지원, 중복수혜불가
자료: 한국장학재단

- (재학생 수) '25년 1학기 국가장학금 I 유형 지원 인원에 직전 3개년도 재학생 평균 변화율을 적용하여 구간별·유형별로 산출
 - 재학생 평균 변화율은 고등교육기관 교육기본통계조사 자료에서 산출한 값을 적용

[표 6] 구간별 재학생 수 전망

(단위: 명)

구분 ¹⁾	유형	2026	2027	2028	2029	2030
1~3구간	편입 ²⁾	113,871	112,581	111,305	110,044	108,797
	기존 ³⁾	16,364	16,179	15,996	15,814	15,635
4~6구간	편입	125,781	124,356	122,947	121,554	120,177
	기존	15,388	15,213	15,041	14,870	14,702
7~8구간	편입	129,013	127,552	126,106	124,677	123,265
	기존	14,170	14,009	13,850	13,693	13,538
9구간	편입	105,851	104,651	103,466	102,293	101,134
	기존	10,062	9,948	9,835	9,724	9,613

주: 1) 1인당 지원액이 동일한 구간의 인원을 합산하여 표기함

2) 개정안에 따라 국가장학금 I 유형에서 다자녀 장학금 수혜자로 편입되는 인원으로 2인 가구 중 둘째임

3) 기존 다자녀 장학금 신청 대상 인원으로 3인 이상 가구 중 둘째임

자료: 교육부 제출자료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 개정안에 따라 다자녀 가정의 기준을 완화하는 경우 추가재정소요는 2026년 1조 4,984억원, 2030년 1조 5,174억원 등 향후 5년간 7조 5,404억원(연평균 1조 5,081억원)으로 추계

[표 7] 추계결과

(단위: 백만원)

구분	유형	2026	2027	2028	2029	2030	합계	연평균
1~3구간	편입 ¹⁾	122,665	126,221	129,772	133,227	136,613	648,498	129,700
	기존 ²⁾	15,851	16,392	16,931	17,457	17,972	84,603	16,921
4~6구간	편입	295,835	297,744	299,670	301,514	303,304	1,498,068	299,614
	기존	28,089	28,435	28,782	29,118	29,446	143,871	28,774
7~8구간	편입	398,724	399,585	400,501	401,318	402,087	2,002,215	400,443
	기존	30,164	30,406	30,651	30,886	31,114	153,220	30,644
9구간	편입	600,557	598,037	595,601	593,119	590,632	2,977,946	595,589
	기존	6,540	6,466	6,393	6,320	6,249	31,968	6,394
소계	편입	1,417,781	1,421,588	1,425,545	1,429,178	1,432,636	7,126,728	1,425,346
	기존	80,644	81,700	82,757	83,781	84,781	413,662	82,732
합계		1,498,425	1,503,288	1,508,302	1,512,959	1,517,417	7,540,391	1,508,078

주: 1) 개정안에 따라 국가장학금 I 유형에서 다자녀 장학금 수혜자로 편입되는 인원으로 2인 가구 중 둘째임

2) 기존 다자녀 장학금 신청 대상 인원으로 3인 이상 가구 중 둘째임

자료: 교육부 제출자료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IV. 부대의견

☐ 없음

V. 작성자

☐ 성명

국회예산정책처	분석관	과장
사회비용추계과	정현수	이진우

☐ 대표연락처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정현수	02-6788-4627	jhs@assembly.go.kr